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52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다. 에너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18조)
- 사.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8.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9.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10. “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

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군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② 군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홍보 강화 및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임실군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수립 등

제8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수는 위원회를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10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도로·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2.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③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수송부문) 군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모든 시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 대책

제14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제15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2. 군민 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공공부지 임대 등) ①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군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군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④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

제19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군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2.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4.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4.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군수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군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